<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년 11월 11일

BNK든든한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O117]

튁	투자 위험	성 등급 4	리 [5	보통 위험	1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 위 위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mark>실제 수익률 변동성</mark>을 감안하여 4<mark>등급</mark>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다양한 국내 · 외 집합투자 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및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BNK는는한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은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2030년** 으로 설정하고,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 한국인 투자자의 생애주기 Data를 반영하여 BNK와 Dimensional이 맞춤형 Glide Path 개발
-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 수준의 환혜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 · 비교지수 : 없음(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수수:		가 부담하 - 및 비용()			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2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 이내	0.46	0.20	0.880	0.4677	179	261	346	527	1,05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0.77	0.51	1.220	0.7774	112	228	348	604	1,334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0.34	0.08	0.600	0.3485	118	188	261	416	86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50	0.24	0.790	0.5084	84	172	263	458	1,018	

투자비용

- (주i)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 보수)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평균)의 최근 보수인 연 0.313%를 예상 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종류	최초설정일	23.11.12	22.11.12	21.11.12		설정일 이후
		~ 24.11.11	~ 24.11.11	~ 24.11.11	-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21-11-08	13.00	6.74	-0.73	-	-0.74
수익률 변동성(%)	2021-11-08	5.87	6.45	8.39	-	8.39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 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1		운용현황				펀드 동종 누익률(해오	운용 경력년수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운용	운용역		운용사		(공사모 포함)
			기구 수	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윤영국	1970	책임 (상무대우)	4개	560억	17.37	9.08	17.37	9.08	4.8년
권기훈	1997	부책임 (파트너)	-	-	-	-	17.37	9.08	-

운용전문 인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윤영국 - 0개, 0억 / 권기훈 - 0개, 0억]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 Portfolio Manager

펀드매니저	Emily Cornell
학력 및 운용 경력	- 2013 ~ 現 Dimensional Fund Advisors, Senior Portfolio Manager and Vice President - 2008 ~ 2011 Calamos Investments, Production Reporting Coordinator - 2007 ~ 2008 Cimarron Partners, Associate - MBA,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 University of Chicago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 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 구조-피두 니다.	사펀드 및 애외운용사 연황 등) 및 그로 인애 유통성이 부족아여 완매가 원활아지 않을 수 있습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혜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혜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 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혜지 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헤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의 일정범위내에서 환혜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혜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유동성 및 설정ㆍ해지와 관련된 위험(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등을 포함도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은 이 투자신탁과는 별도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으로 운용되므로, 개별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변경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해외에 설정되어 운용되는 펀드로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펀드 운용, 세무 등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투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
국가 위험	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일부 투자국가 채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시장의 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 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의안 과제() 따른 위험

주요투자 위험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 N		ㅎ 아드 시트 트이 에시니티 기사하 스 이		
		면정으로 높은 제율이 작용될 경우 습니다.	제우 매당소득, 제·	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		
	투자자금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		
	송환불능 위험	위가 세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		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운용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기	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계		
	변경에 따른 위험	약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운용사를 운용방법 및 운용전략의 일부 또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 운용사의 있습니다.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각각 투자하		
	비율조정형 자산배분에			하여 투자할 수 있는 비율조정 형 자산배		
	따른 위험	분펀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 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				
		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				
				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		
	유동성 위험	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		.며, 이로 인해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집합투자기구 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 기사결정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		
	의 집합투자업자			기구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투자 집합투		
	관련 위험	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	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납입한 경우:				
매입방법		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 에 공. : 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고되는 기순가격을	석용하여 배입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ᄼᆡᆒᆈᄥ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방법				세그 드은 고제하 ㅎ 하매대그 지그		
	7영업일(D+6	· 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		네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배망법 환매수수료)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	업일(D+9) 에 관련시			
환매수수료	7영업일(D+6)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업일(D+9)에 관련서 구 산출총액-부채원	통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7영업일(D+6 없음)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업일(D+9)에 관련시 구 산출총액-부채경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통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환매수수료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업일(D+9)에 관련서 니구 산출총액-부채형 I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통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환매수수료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	업일(D+9)에 관련서 구 산출총액-부채형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녹특과세 부담이 없는	통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u>로 것이 원칙</u> 입니다.		
환매수수료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	업일(D+9)에 관련시 기구 산출총액-부채경 기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그러게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통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환매수수료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개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형 기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녹득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통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월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 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업일(D+9)에 관련시 기구 산출총액-부채 등 에서 반올림하여 등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독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등 시점에 별도의 교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나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2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 등 에서 반올림하여 등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독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독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교 기타소득 또는 퇴직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나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나서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나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고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팅 에서 반올림하여 등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는 독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이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고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를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등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바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네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고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형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는 녹리에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되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대 원천 징수하지 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아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용 를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기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당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나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기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개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장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교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형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는 녹리에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되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대 원천 징수하지 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아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용 를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기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당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나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기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과세 전환절차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개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장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교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형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는 녹리에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되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대 원천 징수하지 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아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용 를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기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당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나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기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과세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아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형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는 독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고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다 원천 징수하지 않 타자신탁 투자 시와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월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등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바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네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과세 전환절차 및 방법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해당사항 없음)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개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장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교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경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녹극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교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대 원천 징수하지 않 타자신탁 투자 시외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월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등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바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네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과세 전환절차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해당사항 없음 - BNK자산운용 - 해외위탁집합	아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7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경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독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교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대 원천 징수하지 않는 자신탁 투자 시외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월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등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바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네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과세 전환절차 및 방법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해당사항 없음 - BNIK자산운용 - 해외위탁집합 업무위탁범위	아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7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기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업자 : Dimensional Fund Adviso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경 에서 반올림하여 원 www.bnkasset.co.kr) 과세의 주요내: 독과세 부담이 없는 자기구로부터의 과서 간 금융소득합계액여 등과 합산하여 개인 연금저축계좌를 통 는 시점에 별도의 교 기타소득 또는 퇴직 좌 설정 약관"을 참 대 원천 징수하지 않는 자신탁 투자 시외는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월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용 = 것이 원칙입니다. 비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등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바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네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매수수료 기준가격 과세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	7영업일(D+6 없음 산정방법 공시장소 구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해당사항 없음 - BNIK자산운용 - 해외위탁집합 업무위탁범위	아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명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 /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 / 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고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자 : Dimensional Fund Advisol : 운용업무 / 운용지시업무 / 단순대계속 모집 가능	업일(D+9)에 관련서 기구 산출총액-부채팅에서 반올림하여 등	등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용 를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기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하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기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	스크 비교바시 파메거리 기다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J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전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 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전 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 명(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
판매 수수료 이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 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
수수료 추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 투자기구입니다.	
관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 않습니다.	: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 오프라인 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판매 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
경로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집합투자(S) 지합투자(S) 지합	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 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 ,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
전드 및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이 가 <기관투자자* 구분 기준>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부자자(F) 부자자(F) 나.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팀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론 함)	건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고액(I)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	합투자기구입니다.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 합자산관리계좌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	
기타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 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지 그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 용제도(디폴프옵션) 전용으로 설정 · 설립된 경우	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
지정운용 (O) 되지연금 사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다음 설립된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